

제257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9. 11.22(금)10:00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자 : 고령군수

2. 제안이유

-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등 규정 (안 제1조~제3조)
- 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 및 신청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제5조)
- 다. 보상금 반환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4. 관계법령

- 가.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등의 의무)
- 나. 도로교통법 제93조

5. 검토의견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 제정취지는

-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소중한 생명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는 고령운전자를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자로 정의 하였으며
-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30만원 이내의 지역상품권을 지원 할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보상금의 지원결정 및 환수 조치에 관한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고령일수로 인지력,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증가 할것으로 예상되므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홍보계획등 종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7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30만원 이내의 지역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사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반환) 군수는 보상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보상금 지원 신청서(제5조 관련)

신 청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연 락 처			
운전면허 자진반납일		년 월 일		
<p>「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붙임 1.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증빙서류 2. 대리인 신청서류(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p> <p>※ 해당 신청자는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 (서명 또는 인)</p> <p>고령군수 귀하</p> <p>「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미동의시 신청 불가)</p> <p style="text-align: center;">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 style="text-align: center;">성명 : (서명 또는 인)</p>				

관계 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